

## 2024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술기반 제조·특화 산업 분야(탄소융복합소재, 농생명바이오,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, 수소생산, 이차전지, ICT융복합 등)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 통합 패키지 제공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『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2월 29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### I 모집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술·제조·특화 산업 기반의 창업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 지원 등 통합 패키지 제공으로 성장 가능한 우수 기업 양성 과 일자리 창출

#### □ 주요내용

- 공고 및 모집기간 : 24. 2. 29.(목) ~ 3. 18.(월) 17:00까지
- 모집대상
  - 사업화 지원 : 도내 1년 이상 3년 이내 창업기업(21. 3. 1. ~ 23. 3. 1.)
  - 사후관리 지원 : 기존 『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 수혜기업
- 선정규모 : 총 10개사 내외(사업화 8개사, 사후관리 2개사)
  - ※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내용 : 인건비, 시제품 제작비, 인증 및 지식재산 취득비, 마케팅비
  - 사업화 지원금 : 기업당 20백만원(사업화 8개사)
  - 사후관리 지원금 : 기업당 10백만원 (사후관리 2개사)
  - ※ 자부담 현금 10%, 현물 20%
- 지원기간 : 협약 일 ~ 2024년 10월 31일

## 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### □ 신청자격

-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이며, 업력 1년 이상 3년 이내(21. 3. 1. ~ 23. 3. 1.) 창업기업
- 기존 『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』 수혜기업(사후관리 기업 해당)

#### ■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

구분	확인 서류 및 기준
개인사업자	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
법인기업	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

\*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
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,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
### □ 신청제외 기업

- 동 사업의 사업화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기 선정 되어 사업 협약 후 중도 포기 및 중단 처분자(기업)
-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, 지자체 및 중앙부처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 ※[참고 1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『근로기준법』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항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### III 지원내용

#### □ 지원내용

- 인건비, 시제품 제작비, 인증 및 지식재산 취득비, 마케팅비
  - 사업화 지원금 : 기업당 20백만원
  - 사후관리 지원금 : 기업당 10백만원 (사후관리 기업 해당)

연번	지원금(원)	지원기업(개사)	비고
1	20,000,000	8	사업화 지원금
2	10,000,000	2	사후관리 지원금
합계		10	

#### ○ 지원항목

구분	세부항목	항목정의
인건비	인건비	○ 직원이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
시제품 제작비	외주용역비	○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	재료비	○ 시제품의 부속품 또는 가공(화학적, 물리적 작용을 통해)되어 시제품의 일부가 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
	기자재구입비	○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로써,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 <b>단, PC 및 노트북 구입 불가 ※지원금의 20%</b>
	기자재임차비	○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, 장비, 부수 기자재 등을 임차하는 경비
인증 및 지식재산 취득비	지식재산권 확보비	○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
	시험인증비	○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, 분석,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
마케팅비	전시회참가비	○ 국내,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 등 소요비용
	홍보영상 및 홍보물제작비	○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, 홈페이지 개선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
	온라인쇼핑몰 입점료	○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* 앱(APP)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 포함
	온오프라인 홍보비	○ 사업 결과물의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및 일간지 정기 간행물 등 소요되는 비용
회계비	회계감사비	○ 지원금 사용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<b>※30만원</b>

#### ○ 사업비 구성 : 지원금의 30% 자부담(현금 10%, 현물 20%\*)

\*현물: 인건비(창업기업 본인 및 기존 임직원), 보유 기자재,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

#### <사업비 구성 예시>

총 사업비	지원금	창업기업 자부담	
		현금	현물
2,600만원	2,000만원	200만원	400만원
	100%	10%	20%

## IV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4. 2. 29.(목) ~ 3. 18.(월) 17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플랫폼 접수

- 온라인 신청 플랫폼(<http://event.jbci.or.kr>) - 2024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공고 - 신청하기

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→ ② '사업신청' 메뉴 선택 → ③ 2024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'신청하기' 선택 → ④ 기본정보 입력(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) → ⑤ 신청서 업로드(용량제한 30MB 유의, 파일형식 PDF) → ⑥ '온라인 접수' 제출 → ⑦ '신청-접수확인' 메뉴 선택 → ⑧ 신청정보 (신청사업명, 이름, 휴대전화, 비밀번호) 입력 → ⑨ '접수현황확인'

- 사업지원 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

- 신청서 수정 및 접수 확인은 공고 마감일까지 가능

※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 접속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접수 마감시간 이후 '온라인 신청 플랫폼' 접속이 차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문의처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허브팀 063-220-8925, ysly@ccei.kr

□ 제출서류 ※ 공고일(24. 2. 29) 이후 발급분만 인정

구분	제출서류		필수여부	비고
1	■ 참여 신청서 (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) 및 사업계획서		필수	1부
구분	증빙서류		필수여부	비고
1	■ 대표자 신분증		필수	-
2	■ 개인	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폐업증명원(폐업 이력 있을 시)	필수	-
	■ 법인	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폐업사실증명(폐업 이력 있을 시)		
3	■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		
4	■ 실적증빙서류(기업성과 작성자) 및 기타제출서류(아이템 관련)		선택	해당자

□ 실적증빙 제출서류

매출	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수출	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 등
투자	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
고용	4대보험 가입자 명부

## V 신청 절차

### □ 선정평가

#### <선정평가 절차>

1단계 서면평가	현장 실사	2단계 발표평가	최종선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·사업성 평가</li> <li>최종선정 기업 1.5~2배수 선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가자문단 통한 2차 발표 평가 준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표자 역량 및 사업화 평가</li> <li>기업 대표 발표 및 질의응답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기업 선정 및 협약</li> </ul>

#### ○ 서면평가

- 평가항목 : 창업아이템의 기술성 및 시장성, 성장 가능성과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, 대표자 역량 등 평가. 최종 선정 기업의 1.5배~2배수 선발
- \*신청자가 최종 선정 기업의 1.5배수 미달시 신청기간 연장할 수 있음

#### ○ 전문가 자문단(현장실사)

- 서류 평가 통과자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한 2차 발표평가 준비
- 전문가 자문단이 사업계획서 검토 후 기업 현장 실사

#### ○ 발표평가

- 평가항목 : 대표자의 의지와 기업의 역량, 아이টে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

#### ○ 최종선정 : 최종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사업화지원금 최종 확정

- \*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추진절차 및 일정

<b>사업공고</b> 2024. 2. 29. ~ 3. 18. 홈페이지	⇒	<b>신청서 접수</b> 2024. 2. 29. ~ 3. 18. 온라인 신청 플랫폼	⇒	<b>결격사유검토</b> 2024. 3. 19. ~ 3. 27.	⇒	<b>1차 서면평가</b> 2024. 3. 28. ~ 3. 29. 평가위원회
<b>최종 선정</b> 2024. 4. 17.	←	<b>2차 발표평가</b> 2024. 4. 16. 평가위원회	←	<b>기업 현장실사</b> 2024. 4. 3. ~ 4. 11. 전문가 자문단	←	<b>서면평가 통과자 안내</b> 2024. 4. 1.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
<b>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안내</b> 2024. 4. 17. 홈페이지 및 문자안내						

※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VI

## 유의사항

### 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면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#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### 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<b>참고 1</b>	<b>지원제외 대상 업종</b>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\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[kssc.kostat.go.kr](http://kssc.kostat.go.kr)) 참고

## 참고 2

## 창업 여부 기준표( '22.6.29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)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	창업아님 창업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	창업 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 창업아님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업	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	창업 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 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 창업아님
	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-	창업아님	
	이종	-	창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 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